

# 2020년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6. 11.(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신창환(분과위원장), 김연희, 심장섭,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9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269건(안건번호 제2020-42460호~43313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42460호~4246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자동인증, 크래킹 파일 또는 시리얼 넘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53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0-9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1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 공개 여부 및 제2호 안건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8쪽의 OSP명, 저작물명, 9쪽의 OSP명, 저작물명, 19쪽의 심의위원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B 위원: 제2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이므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D 위원, C 위원, A 위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겠음. 제4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

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겠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 부분은 전부 공개함.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OSP명, 저작물명, 심의위원명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인 21쪽~37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37쪽~43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금일 심의대상의 주요 권리자는 ‘어도비시스템즈’, ‘한글과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윌트디즈니컴퍼니’, ‘유니버설픽처스’, ‘워너브라더스’, ‘소니픽처스’, ‘넷플릭스’ 등임. 이러한 권리자를 위하여 현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에 관여하고 있거나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지정된 위원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됨. 위원님들께서는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D 위원, C 위원, A 위원, B 위원: 해당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사전에 알려주시기 바람. 해당 분과에서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안건을 따로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42460호~43313호로 1,26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2460호~4246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금번 심의안건 중 웹하드 사이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은 총 10개 안건, 16개 게시물이임. 각 안건의 불법 복제물, 게시자, 버전, 저작권사, 무료 체험용 제공여부, 그리고 자동인증, 시리얼 넘버 포함, 크래킹 프로그램 포함 등에 관한 특이사항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2020-42460

호~4246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 위원: 금일 심의대상 게시물은 총 1,269건임. 그중 순번 1번부터 10번까지는 따로 보고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하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어떤 사안들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사안과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은 별도로 보고하고 있음.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안건은 단순 불법복제물로, 특별한 쟁점 없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안들임.
- A 위원: 보호원이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보호원의 재택근무자들이 웹하드 사이트의 이용권을 구매하고 직접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불법복제물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A 위원: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영 전문위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등 약 380명의 재택근무자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음.
- A 위원: 온라인 모니터링단의 보수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급여는 최저시급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정현순 사무처장: 보호원은 1년 단위로 기간제 재택근무자를 채용하고 있음. 보호원의 재택근무자 채용 제도는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일종의 복지 제도임. 복지 혜택은 다수에게 고르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음.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음. 근로자의 만족도는 높은 수준임.
- C 위원: 지원자가 미달하는 경우는 없는지?
- 정현순 사무처장: 그렇지 않음. 면접 전형까지 실시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보호원에서 직무 교육도 진행함.
- A 위원: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약 380명의 근로자만으로도 충분한지? 보호원 업무에 인력이 더 요구되지 않는지 궁금함.
- D 위원: 보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음.
- B 위원: 주로 웹하드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라서 인력을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개별 건수를 모두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재택근무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음.
- A 위원: 관리자들은 시정권고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의 경우 저작물 보호요청이 빈번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사는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기존 심의위원회에서 소프트웨어 권리자들이 자물쇠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상업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
- A 위원: 소프트웨어 권리자들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시정권고 심의 제도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있음.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42465호는 ◇◇◇사의 ‘◇◇◇◇◇◇◇◇◇◇◇◇◇◇’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 있음.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고 정품 판매 가격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게시물은 얼마에 판매 중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 C 위원: 선박 설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약 2억 원이라고 알고 있음. 설계, 작곡, 디자인 등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고가임.
- D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가결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2460호~4246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42470호~43313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1,253건 게시물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음.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안전 목록 및 증거자료 등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신창환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 안전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0-42470호~4331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1,253건 게시물 모두 데드카피임을 확인했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재택 근로자가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면 본원에 근무하고 있는 온라인대응팀 직원은 심의시스템에 해당 자료를 등록함. 이때 한 번 더 확인을 함. 이후 보호원이 시정을 권고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사무처 직원이 심의안건을 상정함. 이 과정에서 다시 확인을 함.
- D 위원: 재택 근로자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다운 받은 불법복제물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으로 넘어오지 않음.
- A 위원: (안건을 특정하며)이 안건을 큰 화면으로 다시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음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가수:전미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2684호~42692호는 최신 발매된 가수 '전미도'의 음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사안임. 최근 방영 종료된 국내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임.
- D 위원: 웹하드 사이트는 총 몇 개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정식 등록된 사이트는 현재 총 38개임. 하나의 OSP에서 여러 개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서 온라인 서비스를 기준으로 하면 약 50개임.
- C 위원: 웹하드 등록제가 시행되었을 때에는 약 80개였던 것으로 기억함.
- B 위원: 시장 규모가 많이 줄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2975호~42982호는 영화 '온워드: 단 하루의 기적'을 네이버 밴드 등에서 제공한 사안임. 저작권사는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임. 아직 국내 정식 개봉하지 않았는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음.

- A 위원: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정식 개봉한 영화일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그러함. 미국에서는 정식 개봉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국내 개봉 연기된 영화임.
- B 위원: 할리우드 영화를 불법 복제하는 체계적인 조직이 있음.
- A 위원: 편집과정에서 유출되는 경우도 존재함.
- B 위원: 국내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음. 자막 담당 직원이 영화 파일을 지인에게 송부했다가 그 지인이 해당 영상을 웹하드 사이트에 제공한 사례였음.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트롤: 월드 투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43001호~43004호는 '유니버설픽처스'가 제작하여 2020. 4. 29. 정식 개봉한 영화 '트롤: 월드 투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공한 사안임. VOD 서비스와 극장 동시 개봉한 영화임. 해당 영화를 네이버 시리즈 등 합법 시장에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22,000원을 지불해야 함. VOD 이용료가 상대적으로 비싼데, 4인 가족이 시청한다면 영화관보다 저렴함. 기존의 홀드백 관행이 바뀌고 있음. 코로나바이러스와도 관련이 있을 것임. 코로나가 OTT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 시장도 키우고 있는 것 같음. 재밌는 사실은 한류 아이돌 '레드벨벳'이 해당 영화에서 K팝 트롤 역에 캐

스팅되어 대표곡을 한국말로 선보였다는 점임.

- B 위원: 극장과 VOD로 동시 개봉하는 경우 VOD 이용료가 극장 이용료보다 높게 책정됨. 예컨대, 극장 이용료가 만 원이라면 IPTV 이용료는 12,000~15,000원 정도로 책정됨. 가족이 다 함께 볼 수 있으므로 가격이 더 높은 것임.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범탈'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0-43042호~43060호는 최근 개봉한 영화 '범탈'을 네이버 밴드 등에서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지난 주부터 VOD 서비스를 시작한 바 해당 영화 관련 모니터링 자료가 계속 보고되고 있음.
  
- A 위원: IPTV 이용자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 B 위원: 극장 관객 수가 1,000만이라면 온라인에는 대략 200만 이용자의 수요가 있음.
  
- A 위원: 극장 매출과 온라인 매출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 B 위원: 영화마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온라인 매출은 총 매출액의 25 퍼센트 정도를 차지함. IMF 외환위기 전인 1997년도에는 비디오 매출과 극장 매출의 비율은 6:4 정도로, 비디오 매출이 더 높았음. 비디오 매출이 줄어들어도 4:6 정도였음.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영화 산업의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볼 수 없음. 물론 극장 매출이 크게 증가하여 총 매출 역시 증가했지만, 비중은 변하지 않았음. 온라인 매출도 함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장 매출이 2배 넘게 성장하여 비중 자체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임. 평균 영화 제작비는 2005년경 대략 30억 수준이었는데, 현재 상업영화 제작비는 약 80억 정도임. 영화 제작비가 상승했는데도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가 많음.

- A 위원: 손익분기점에 이르는 영화는 몇 편 정도인지?
- B 위원: 열 편 당 세 편 꼴임. 흑자가 나는 경우는 열 편에 한 편 꼴임. 영화 한 편의 수익으로 나머지 일곱 편의 적자를 상쇄하는 구조임. 연간 한 편에서 두 편을 만드는 회사는 대박 아니면 쪽박임. 이에 최소 열 편을 만들어야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언더워터'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292호~43308호는 2020. 5. 27. 개봉하여 현재까지 상영 중인 영화 '언더워터'를 웹하드 사이트 등에서 제공한 사안임. 2020. 6. 8. 기준으로 국내 예매율 2위이며, 누적 관객 수는 103,327명임. 권리자는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유한책임회사'임.  
(영화 '그루지'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43309호~43311호는 최근 개봉한 영화 '그루지'를 불법 제공한 사안임. 동명의 영화가 2005년과 2018년에 각 개봉된 바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은 2020년 개봉한 영화임.
- B 위원: 웹하드에서도 합법적으로 콘텐츠가 유통되는데 합법콘텐츠는 모두 제휴 등록되어 있음. 정상적으로 제휴 등록된 영화의 가격은 3,000원 이상임. 100포인트 등으로 판매하는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에 해당함.

- D 위원: 1,000 포인트로 판매되는 콘텐츠는 합법인지 아니면 불법인지?
- 정현순 사무처장: 일반적으로 불법복제물에 해당함.
- B 위원: 드라마나 음원은 별론으로 하고 영화가 1,000포인트에 제공되고 있다면 불법복제물에 해당함.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42470호~43313호 모두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해야 함.
- A 위원: 1,253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가결함.
- D 위원: 특별한 이견 없고 가결 의견에 동의함.
- 신창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2470호~4331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42460호~4331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

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4. 폐회 선언

- 신창환 분과위원장이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10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6. 18.

분과위원장 신창환

위원 김연희

위원 심장섭

위원 최현용